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1609 판결 [보증금지급청구]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환경공단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판결 선고 2015. 7. 23

원 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선고 2014나2031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STX건설'이라고 한다)의 지분비율은 30%로서 STX건설이 이 사건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출자비율을 0%로 변경한 2013. 7. 22. 당시

STX건설의 기성공사대금은 247,701,096원이고, 원고가 당시 STX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212,601,396원(= 247,701,096원 - 35,099,700원)이므로, 이 사건 STX건설의 선급금 217,548,000원 중 미정산 선급금은 4,946,604원(이 사건 선급금 217,548,000원 - STX건설이 가지고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 212,601,396원) 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선급금의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건설공제조합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경우 그 보증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 공사내용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 · 공사내용 등을 변경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가중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34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STX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STX건설의 지분을 변경함으로써 자신의 선급금반환의무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보증책임도가중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지분변경약정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분변경약정의 효력과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권순일